된다. 등록공무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 거나, 이의신청 내용의 일부 인용에 불 복하는 경우와 이의신청일로부터 6월 이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법원(Valuation Tribunal)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이러한 일련의 구제 절차는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어떠한 종류 의 전문가 도움 없이도 수행할 수 있다. 그러나 납세자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면 전문가를 선임하여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다. 등록 공무원이 이 의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. 이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평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.

## 10. 평가법원의 지위

평가법원은 council과 평가청의 지역 사무소와는 완전히 독립된 사법기관 (judicial body)이다. 일단 소가 제기되 면 평가법원은 원고와 접촉하여 청문 절 차 등을 협의하게 되며 자세한 재판절차 에 관한 책자를 원고에게 송부해 준다. 원고가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는 한 청문 에 따른 비용은 들지 않는다. 평가법원 의 판결에 대하여는 고등법원(High Court)에 항소할 수 있다. 재판 계류중에도 납세의무는 이행해야 한다.

## 11. 준공통보(Completion Notices)

council 정부는 건축물이 완공되어 council tax의 과세대상 주택이 되는 시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의 준공예정일, 개축건물의 개축공사 완공 예정시기와 함께 준공・완공시에 평가가격을 통보한다. 이 통보는 준공 또는 완공시기를 명확히 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데에 의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. 이 통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법원에 4주 이내에 제소하여야한다.

## IV.세액의 결정

## 1. 세액 결정의 변수

council tax는 council에 의해 결정 된다. 납세자 개인이 납부하게 될 세액 은 주택의 가액, 자치단체의 지출 예산 과 다른 세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.